

02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 : 유럽의 미디어 질서 재편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들어가며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유통을 매개하는 인터넷서비스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유럽연합(EU)은 2022년에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에 대응하여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2024년에 EU는 「미디어자유법」(Media Freedom Act)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보완하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충분히 다루지 않는 미디어 자유, 미디어 다원주의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¹⁾ 특히 「미디어자유법」은 모든 미디어를 포괄하는 최초의 EU 법률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언론과 이용자 사이에 매우 중요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책무도 함께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²⁾

이 글에서는 미디어 자유, 미디어 다원주의 및 온라인플랫폼의 공적 책임과 관련하여 EU의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이 EU 역내의 미디어시장 재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자유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미디어자유법」은 미디어서비스의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EU 역내의 미디어서비스시장에 대한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미디어자유법」의 입법 배경에는 전통적인 언론에 대한 위협 즉 회원국 내의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 언론인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위협, 언론사의 경제적 여건 악화,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³⁾ 이처럼 「미디어자유법」은 언론의 독립성과 다원주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역내 공통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독립된 언론사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역내 미디어시장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디어자유법」상 미디어서비스(media service)란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편

1) The European Media Freedom Act (EMFA) – Regulation (EU) 2024/1083. URL: <https://www.media-freedom-act.com/>

2) Nenadić, I. & Brogi, E. (2024, 8. 28). The Game of Boards: The role of authorities in concerting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Media Freedom Act for protecting media freedom. (media laws). URL: <https://www.medialaws.eu/the-game-of-boards-the-role-of-authorities-in-concerting-the-digital-services-act-and-the-media-freedom-act-for-protecting-media-freedom/>

3) 박찬경 (2024). 유럽미디어자유법의 이해와 함의: 초연결시대, 다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하여. <언론중재>, 여름호 (통권171호), pp.52-63.

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언론간행물을 공중에 정보제공·오락·교육 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며, 미디어서비스제공자(media service provider)도 개인 또는 법인의 전문적 활동 목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콘텐츠 선택 및 이를 배치하는데 있어 편집권을 갖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미디어자유법」은 게이트키퍼(gate keeping)에 기반한 전통적인 언론 및 언론사가 주된 보호 대상이 되며, 인터넷상 일반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나 이들 콘텐츠를 편집권 없이 노출시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명시적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미디어자유법」은 전통적 형태의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법 제4조에서는 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편집상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 당국은 편집권에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언론보도의 출처와 내밀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즉 언론보도의 출처와 내밀의 의사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강요, 언론보도의 출처나 내밀한 의사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서비스제공자나 편집자의 구금·제재·조사, 미디어서비스제공자나 편집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입적인 감시소프트웨어 운용은 금지된다.

「미디어자유법」은 공공서비스 미디어제공자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동법상 공공서비스 미디어제공자(public service media provider)란 국내법상 공공서비스 송신을 위임받고 그 수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미디어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동유럽에서는 정부의 압력에 의한 공영방송의 위기 문제가 있다면, 서유럽에서는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위협의 문제가 있어왔다.⁴⁾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법 제5조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서비스 미디어제공자가 편집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독자에게 중립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공서비스 미디어제공자의 사장 또는 이사회 위원의 임명·해임 절차가 공공

4) 신동윤 (2021. 4. 11). 정권 나팔수 되거나 "좌파"라 공격받거나...유럽 공영방송 수난시대. <헤럴드경제>. URL: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2593866>



서비스제공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서비스 미디어제공자를 위한 자금이 조달되는 절차가 사전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상의 공공서비스 미디어제공자의 보호조치의 집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미디어자유법」은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독립성은 비단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소유주와 재원과 같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언론이 소유주나 광고 등 재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자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동법에서는 미디어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실제 영향을 행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사항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투명성 보장 조치는 편집권의 독립성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위협성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⁵⁾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제6조]을 보면, 미디어서비스제공자는 직간접적인 소유자의 이름, 매년 정부광고에서 받은 공공자금액, 제3국의 공적기관으로부터 받은 광고수익을 공개해야 하며, 뉴스와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서비스제공자는 편집적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예를 들면 뉴스와 시사정보

5) 「미디어자유법」 전문 32.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을 공개해야 한다[제6조].

특히 「미디어자유법」은 기성언론 외에 언론보도를 대개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 미디어 환경에서는 언론사가 콘텐츠의 생산자와 유통자 기능을 함께 수행해왔지만, 현재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뉴스 수요자가 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주요 재원이 광고라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트래픽 유입은 언론사의 재정 안정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법상 초대형 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법」을 준용하여, EU 역내에서 월평균활성화이용자수가 4,500만명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으로 이사회가 지정한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동법 제18조에서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제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이용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를 중단하거나 콘텐츠의 가시성(visibility)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전에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첫째, 콘텐츠를 중단시키거나 제한하는 결정의 이유를 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상기 결정 이유를 수령한 24시간 내에 또는 시급한 경우에는 답변하기에 충분한 더 짧은 시간 내에 의견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상의 의무는 「디지털서비스법」상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조치·플랫폼상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완화조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상 미성년자 보호조치 및 폭력·협오 선동 등으로부터 대중보호조치, EU법상 불법정보와 관련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넷째,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중단 및 가시성 제한 조치를 할 경우 미디어서비스제공자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제공자에게 대화를 요청할 수 있고,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제공자는 정당하지 못한 중단 및 가시성 제한 조치의 폐기, 향후 방지 대책에 관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미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다섯째,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제공자는 매년 ① 이용약관 위반 이유로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중단한 건수 ②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근거 ③ 미디어서비스제공자와 대화한 건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디어자유법」은 주로 언론사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 등을 규율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이용자는 자신의 흥미나 선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미디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용이한 제어수단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기와 인터페이스의 제조자, 개발자, 수입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용이하게 어떤 때라도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디어자유법」은 미디어 시장의 측정과 절차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미디어 시장의 집중도는 미디어 사업자의 소유 및 진입 규제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미디어시장집중도는 미디어 다원주의 관점에서 EU 역내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방식의 다양성과 회원국간 조정의 부족은 국경을 넘어 운영하려는 미디어사업자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적,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⁶⁾ 따라서 동법에서는 정부는 미디어 다원주의와 편집권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시장의 집중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국내법에 마련해야 하며, EU집행위원회가 열거된 미디어시장집중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6) 「미디어자유법」 전문 62-63

언론의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미디어자유법」은 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적 자원이 배정되도록 시청률측정 및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디어의 주요 수익원인 상업적 광고에 있어 시청률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청률 측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법 제24조에서는 시청률측정시스템 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시청률측정시스템제공자는 시청률측정시스템과 동 시스템에 사용된 방법론이 투명성, 공정성, 포괄성, 비례성, 비차별성, 비교 및 검증가능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청률측정시스템제공자는 미디어서비스제공자 및 광고주 등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고, 최신의 시청률측정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측정 시스템의 방법과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1년에 한번 독립적인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주요 수익원로서는 상업적 광고 외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이 있다. 정부광고 및 정부계약에서 받은 공적자금은 미디어서비스제공자와 온라인플랫폼제공자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주요 수익원이지만, 다른 한편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 행사나 이해관계에 취약하게 하는 등 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자유와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⁷⁾ 이에 동법 제25조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미디어서비스제공자나 온라인플랫폼제공자에 대한 정부광고 등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공적자금이나 기타 이익부여 등은 사전에 마련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정부광고는 다양한 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게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 광고에 대한 공공지출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하며, 정부 기관은 미디어서비스제공자와 온라인플랫폼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광고지출의 배정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과거 EU에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었으나,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범죄정보의 유통, 그리고 허위정보, 혐오표현, 사이버폭력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등의 문제가 심각

7) 「미디어자유법」 전문 72



해집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등 중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불법·유해 콘텐츠임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는 종국적으로 온라인중개서비스가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핵심은 중개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를 부과하는 것에 있는데, 주의의무는 중개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화되며, 초국적 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 제공자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모든 중개서비스제공자는 공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다.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부과하는 제한 조치, 즉 알고리즘에 의한 조치 및 인적 개입 등에 의한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중개서비스제공자의 제한조치는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주의 등을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제14조]. 또한 모든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적어도 연1회 콘텐츠 조정에 대한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동 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제15조]. 첫째,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은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명령의 건수 및 행정명령에 대해 조치한 후 당국에 통지한 시간 둘째, 중개서비스제공자 중 호스팅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처리 건수 및 시간 셋째, 중개서비스제공자 중 온

라인플랫폼제공자의 경우 불만제기시스템을 통해 받은 이의제기 건수 및 근거, 이의제기에 따라 취소된 조치 건수 및 조치에 걸린 시간이다.

다음으로 호스팅서비스제공자(providers of hosting services)는 추가적으로 불법정보의 유통을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신고받은 정보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신속한 조치 의무가 있다[제16조]. 나아가 호스팅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정보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조치 즉 정보 삭제·차단, 금전적 제한, 계정 정지 및 차단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제17조].

온라인플랫폼제공자(providers of online platforms)은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온라인플랫폼제공자는 신고접수 된 내용을 포함하여 불법정보 또는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정보 삭제·차단, 이용자계정 정지, 금전적 제재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불만제기시스템(complaint-handling system)을 제공해야 하고, 조치한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조치대상이 된 정보가 불법적이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결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반복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거나 근거없는 신고나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오용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신뢰를 해치고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판단하여,⁸⁾ 신고시스템 및 불만제기시스템을 통해 근거가 없는 신고나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마지막으로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제공자(Providers of such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of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는 온라인중개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온라인플랫폼제공자의 주의 의무를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법상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이란 EU 역내 월평균 활성화이용자수가 4,500만명 이상인 지정된 사업자로서 이들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내의 콘텐츠 유통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제34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제35조] 그 조치에 대해 외부의 감사[제37조] 및 투명성 보고서 작성[제42조] 의무가 있다. 먼저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제공자는 적어도 연 1회 구조적 위험(systemic risks)을 확인·분석·평가해야 하는데, 구조적 위험이란 ① 불법정보 유통, ② 인간의 존엄성, 사생

8) 「디지털서비스법」, 전문 63



활·가족생활, 미디어 자유와 다원주의를 포함한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차별금지, 아동의 권리, 소비자보호 등 기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③ 시민 담론과 선거과정, 공공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 ③ 젠더기반폭력, 공중보건·미성년자 보호,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특히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제공자는 상기 위험평가를 수행시 서비스 내의 추천 및 관련 알고리즘 시스템, 이용약관, 콘텐츠조정시스템, 광고제공시스템 등이 구조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은 상기 구조적 위험에 대한 위험완화조치(이용약관의 조정, 신고절차 개선 및 정보 삭제·차단 등의 콘텐츠조정절차 조정, 추천시스템을 비롯한 알고리즘 시스템 조정, 광고시스템 조정 등)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연 1회 동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험평가 결과, 위험완화조치 등의 구체적 내용을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의무 부과와 함께 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회원국은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52조],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의 경우에는 EU집행위원회가 직접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74조].

나오며

EU의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회원국의 재량에 의한 전환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가 아닌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별 회원국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⁹⁾ 하지만 EU는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은 방송, 신문 등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도 상호 보완을 통해 전체적인 역내의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역내 미디어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있다. 즉 「미디어자유법」 제정을 통해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언론사가 EU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온라인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온라인상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EU의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이 미디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상호간 토론 형성, 저널리즘의 품질 및 미디어의 민주적 역할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이 미디어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고, 동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⁰⁾ 즉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이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위협평가와 그 결과에 기반하여 위협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자유법」은 최초로 미디어콘텐츠가 초국적온라인플랫폼의 콘텐츠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확립하면서,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주의는 빅테크기업의 콘텐츠조정조치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¹¹⁾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기성 언론 및 인터넷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

9) 이재호 (2023). 유럽 미디어자유법안의 제안과 그 의미. 《문화예술과 법》, 제3권 제1호, pp.91-114.

10) Nenadić, I. (2024, 10. 18). Policy in Practice: The interplay of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uropean Media Freedom Act. (EUI). URL: <https://cmpf.eui.eu/digital-services-act-and-european-media-freedom-act/>

11) Nenadić, I. & Brogi, E. (2024, 8. 28). 앞의 글

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가짜뉴스나 혐오표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시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하는 정보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EU의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언론사 및 온라인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제도적인 진척으로 평가할 수 있다. 🌐